



보도 일시	2022. 7. 22.(금) 11:30	배포 일시	2022. 7. 21.(목) 16:00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 신양수 (02-2100-2032)
	대테러센터	담당자	사무관 최현조 (02-2100-2034)

한덕수 국무총리, 제15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
“국민 보호는 국가의 최우선 의무!”
테러예방 철저 및 신속 대응시스템 확립 당부

- ◆ 하반기 대테러활동 추진계획: 위해요소 차단, 대비태세 유지 위한 6개 중점과제
- ◆ 화생방테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한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지정
- ◆ 발생 시 과급력이 높은 화학·방사능 테러 예방 및 대비역량 강화
- ◆ 테러위험물품 차단 강화 등 빈틈없는 공·항만 국경 안전감시망 구축
- ◆ 테러대상시설 지정 및 안전대책 수립 통한 초고층건축물 관리 강화

□ 정부는 7월 22일(금)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 회의실에서 제15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*를 개최했다.

* 「테러방지법」 제5조에 의거 구성·운영, 위원(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)

○ 오늘 회의에서는 「하반기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」을 반영한 「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」과 「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지정안」 등 3건의 안건을 심의·의결하였으며,

- 「화학테러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방안», 「방사능테러 예방 및 대비현황», 「테러위험물품 밀반입 차단대책」 등 5건의 안건을 보고했다.

□ 한 총리는 “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의무”라고 강조하면서, “철저한 테러예방과 신속한 대응시스템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‘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’을 만드는 데 한층 더 노력을 경주해 줄 것”을 대테러 관계기관에 당부했다.

① 2022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(심의·의결)

< 상반기 추진실적 >

- 정부는 국제정세 변화에 맞춰 재외국민 안전을 확보하고, 위험인물·자금 적발·조치를 강화하는 등 국내·외 테러 위협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는 한편,
 - 주요 행사(대통령 취임식 등), 다중이용시설, 관리취약시설 등에 대한 관계부처 대테러 합동점검, 공·항만 유입 위해물품 적발 등 테러이용수단 관리를 통해 테러 위협요인을 사전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하였다.
- 또한, 「항공보안법」, 「해적피해예방법」 등 법령 개정을 통해 대테러 활동의 근거를 보강하고,
 - 대테러특공대 합동훈련(6.7~17) 시 과학화전투훈련과 원격지(제주) 전개훈련을 최초 실시하여 실전능력을 높이는 등 테러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.
- 이에 더해, 해외 대테러 연합훈련 실시, 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등 테러 예방을 위한 국제협력도 지속함과 더불어,
 - 지난달에는 UN 대테러실에서 우리나라를 국경보안 우수국가로 선정, 사례집을 회원국에 배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제고하였다.
- 금년 2월 입출항 신고·출입국심사 체계 개선, 계류시설 보안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마리나항 출입국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·발표하였고,
 - 관련 법령개정, 국제항해 레저선박 전용 마리나항 조성 등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.

< 하반기 정세전망 >

- (국제)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은 △러시아 대테러활동 약화 △곡물가격 폭등에 따른 중동·아프리카 내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 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,
 - 미국·유럽 등에서는 인종·종교적 혐오에 따른 이민자 등 대상 증오범죄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.

- (국내) 각국의 방역완화로 인해 외국인테러전투원이 잠입할 가능성이 있고 테러단체 추종자들의 자금지원 활동 지속이 우려된다.
- 국가중요시설 대상 북한의 사이버공격 등 위협도 예상되며, 극단주의 성향을 갖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불특정 다수 대상 분 노표출·사회질서 교란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.

<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>

- 정부는 테러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정적 대비태세를 유지하여 ‘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’을 유지한다는 대테러활동 목표 아래 6개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.
- ① 외국 정보·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테러위험인물의 잠입과 온·오프라인 상 테러자금 모금·지원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.
- ② 테러위협 등 발생을 대비하여 국·내외 테러위기 징후 조기경보 시스템 및 신속한 단계별 대응체계를 지속 유지한다.
- ③ 관행적 관리로 국민안전 위협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·중요시설을 면밀히 점검하고, 총포·화약류 등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.
- ④ 대테러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대상 교육을 내실화하고, 국민의 테러 인식 및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.
- ⑤ 테러 취약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법령·지침 등을 보완하고, 조직·인력·장비를 확보하는 등 대테러활동의 기반을 지속 확충한다.
- ⑥ UN 등 국제기구와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, 위험지역 진출 재외 국민과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활동도 지속 실시한다.

②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규정 개정안 (심의·의결)

-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규정 제4호 「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」의 운용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한다.

- 현재 복합건축물의 경우, 각 시설별 안전대책은 있으나 **공동 안전대책은 대부분 수립되어 있지 않아** 유기적 테러 예방활동 수행에 한계가 있어,
 - 복합건축물에 자체 협의체가 구성된 경우, 동 협의체가 통합적인 테러 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.

③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지정 (심의·의결)

- 정부는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전문화된 대화생방테러 작전 지원을 위해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예하 21(경기·인천지역 지원)·24(전국 지원) 특수임무대대를 통합하여 **화생방특수임무단(전국 지원)을 창설할 예정(11.1)**이다.
 - 이에 따라 지역별로 전담 운용되고 있는 **軍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중 경기·인천지역을 지원할 특수임무대를 신규 지정한다.**

④ 화학테러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방안 (보고)

- 해외에서는 화학물질 폭발사고·테러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, 화학테러는 발생 시 파급력이 크고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어 국내에서도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.
 - △화학물질 불법유통 관련 온라인 감시 △위험물질 취급사업장 점검 등 화학테러 위험요인 선제적 제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,
 - △가상·증강현실 기술 활용 실전훈련 △화학분야 대테러 기술 개발 △화학테러 가상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화학테러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.

⑤ 방사능테러 예방 및 대비현황 (보고)

- 방사선은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어서 비록 소량의 방사성물질이라도 테러에 활용된다면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빈틈없는 대비가 필요하다.
- 정부는 △정기적인 핵물질 등 보관현황 확인 △원전 내 방호구역 출입관리 강화 △전국 공·항만 방사선감시기 설치 등 위험요소 차단활동을 지속 실시하고,
 - △신속한 오염확산 방지·제염체계 구축 △핵물질 사용기관 전문인력 교육 내실화 △국내·외 방사능테러 훈련 실시 등 대응체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.

⑥ 개인무역을 통한 테러위험물품 밀반입 차단 대책 (보고)

-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특송 등 개인 무역 급증에 따라 테러위험물품 밀반입도 확대되고 있어, 공·항만 국경 안전 감시망을 보다 강화한다.
- 이를 위해 △AI 활용 위해물품 적발 모의훈련 등 전문교육·훈련 강화 △고해상 복합 X-ray 등 최신기술 활용 장비 개발 △테러물품·마약 등 고위험 여행자 검색 확대 △대테러조직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.

⑦ 초고층건축물 테러예방 강화대책 (보고)

- 초고층건축물은 상징성 등으로 인해 테러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과 동시에 테러 발생 시 대규모 인명·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건축물로, 테러 대상시설 지정 등을 통한 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.
- 아직 테러대상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초고층건축물의 경우,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점검 등을 통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정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,
 - 신규 테러대상시설로 지정되면 △출입통제 및 자체 방호계획 △긴급대응 체계 구축 △비상대비 및 사후처리대책 등 ‘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종합대책’ 수립을 지원하고, 연 1회 이행실태도 점검한다.
- 다만, 공동주택으로 테러대상시설에서 제외되는 초고층건축물의 경우, 「초고층재난관리법」에 의거하여 ‘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’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.